

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

의안 번호	2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3. 2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993년 3월 11일 충청북도의회로 부터 이송되어 온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및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.

이 유

1. 도시계획법령상 위원 구성요건에 위배

-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(지방도시계획위원회) 및 제76조(운영세칙)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위원회로서,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(지방도시계획위원회) 제3항의 규정에서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,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도의회 의원은 제외하고 단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있어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구성요건에 명백히 위배됨

2.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제약하는 새로운 의무규정 창설은 지방자치법 정신에 위배

-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도지사에게 전속된 기관이나,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의무규정을 창설하는 것은

○ 도지사의 집행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집행권과 의결권을 분리 운영하는 기본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

○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(조례)의 규정에도 위배됨

※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 제6조(회의 비공개) :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

첨 부 : 1. 조례안 1 부

2. 내무부장관 재의요구 지시 공문사본 1 부

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3. 8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제안이유

- 도시계획법 시행령(1992. 7. 1. 대통령령 제13684호)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
- '91. 7. 19 충청북도직제규칙개정(제1779호)으로 조례개정

주요골자

-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중 “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”를 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2인 이내로”개정
- “부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”를 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”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는 추가 개정
-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조항 신설
-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조항 신설
- 위원회 기능중 “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”를 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되지 않은 업무”로 개정
- 시장 군수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도록 명기 개정
-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명기하도록 개정
- 도지사에게 보고를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으로 명기하도록 개정

근거법령 :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2
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의 2내지 제65조

첨부

1.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2조 제3항중 "부지사"를 "도지사"로 하고,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인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
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 2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소위원회(이하 "소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조의 3(상임기획단) 위원회는 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와 도지사가 위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, 지도, 조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.

제4조 제2항중 "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"를 "시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되지 아니한 업무"로 한다.

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당해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당해 시장, 군수에
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7조 제2항중 "도시과장"을 "도시계획과장"으로 한다.

제8조중 "도지사에게"를 "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